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07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 박재호·전재수·최인호

김정호·허 영·김수흥

한병도 • 위성곤 • 김경협

정춘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, 자동차 제작사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,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·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, 판매 전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해당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("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, 2019. 5.), 자동차 제작사 등이 7천여 대의결함 있는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가 제도 개선 등을 하도록 통보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, 소비자의 생명ㆍ재산과 구매 전 선택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

자동차 제작사 등은 결함을 시정한 후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 시정조치한 내역도 판매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하며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4, 제74조제3항제5호, 제84조제4항제15호의2 신설 등).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4(판매 전 결함시정 등)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중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은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.
 - ② 자동차 제작·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조치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52조 전단 중 "제31조의3"을 "제31조의3, 제31조의4"로 한다.

제7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3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(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)
- 제84조제4항 제15호의2를 제15호의3으로 하고,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제4항까지"를 "제5항까지"로 한다.
 - 15의2. 제31조의4제2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4조제6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<u> <신 설></u>	제31조의4(판매 전 결함시정 등)				
	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				
	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				
	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				
	를 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				
	품 중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				
	동차 부품은 시정조치한 후 판매				
	<u>하여야 한다.</u>				
	② 자동차 제작・판매자등이나				
	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				
	정조치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				
	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				
	<u>다.</u>				
제52조(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)	제52조(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) -				
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,					
제9조, 제10조제5항(제10조제7항					
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					
다),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,					
제18조, 제20조, 제22조, 제23조,					
제26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					
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,					
제31조, 제31조의2, <u>제31조의3,</u>	<u>제31조의3,</u>				
제32조, 제33조, 제33조의2, 제34	제31조의4				

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. 이 경 우 "시·도지사"는 "시장·군수 · 구청장"으로, "등록"은 "신고" 로. "자동차"는 "이륜자동차"로. "자동차안전기준"은 "이륜자동차 의 안전기준"으로, "부품안전기 준"은 "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 준"으로, "자동차자기인증"은 "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"으로. "부품자기인증"은 "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"으로, "자동차제작 자등"은 "이륜자동차의 제작자 등"으로, "부품제작자등"은 "이 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"으로, "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" 는 "이륜자동차 실측확인"으로 본다.

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①·② (생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(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)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④ ~ ⑥ (생 략)

제84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- 15의2.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6. ~ 24. (생 략)
- ⑤ (생략)
- ⑥ 제1항부터 <u>제4항까지</u>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,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3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
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
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

자(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

는 경우는 제외한다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(4)	 	 	 	

-----.

- 1. ~ 15. (현행과 같음)
- 15의2. 제31조의4제2항(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

<u>15의3.</u> -----

16. ~ 24. (현행과 같음)

-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-----<u>제5항까지</u>-----

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
-----.